26/27시즌 리프트 시즌권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산리조트㈜(이하 '사업자'로 합니다)가 판매하는 2026/2027시즌 리프트 시즌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의 권리와 의무 및 이용절차 등 기타 필요 사항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가. 시즌권은 회원권이 아니며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를 위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리프트에 국한된 특별 할인상품입니다.
나.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입니다.

제3조 (사용기간 및 적용)

가. 시즌권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서비스 기간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간입니다.
1) 기본사용기간 - 전일권 : 개장일로부터 60일
2) 서비스기간 - 전일권 : 60일 이후 ~ 폐장일
나. 권종 이용가능 시간

구분	전일권
적용	시즌 중
이용시간	전체 시간 대
	단, 기후여건에 따라 심야 운영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정설시간 제외 심야 운영시기 : 12월 20일 전후 ~ 2월 중순 경 예정 운영 (기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회원 시즌권 리프트 탑승 라인 별도 운영(일반 시즌권 입장 불가)
다. 2026/2027시즌의 시즌권 유효기간 중,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천재지변, 기상 여건(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사회재난, 정부의 지침(전염병, 감염병 등 관련 명령, 집합 금지, 이용제한, 시설 폐쇄 등), 리프트 정비, 보강 제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임시휴업, 국내・외 스키 관련 대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슬로프와 리프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자격, 의무 및 시즌권 관리, 발급)

가.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지며 리프트 탑승 시 항시 시즌권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좌측 상단쪽으로 배치하여 게이트 통과 시 인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으로 당사에 등록된 본인 외 제3자의 이용은 불가하며 적발 즉시 압수되고 시즌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 이용자는 본인 사진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요원이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에 불응 시 리프트 탑승이 불가합니다.
라. 시즌권 분실 및 도난, 파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리프트 탑승이 불가합니다.
당일 리프트 이용을 위해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 시즌권 미소지 시 리프트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상품 이용료를 납부하신 후 이미지파일(jpg)을 규격에 맞추어 1주일 이내에 등재시켜야 합니다.

지.
(제로 3cm x 7cm, 200 dpi 이상, 300KB ~ 1MB이하 사진)

2)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을 등록해야 시즌권 발급이 됩니다. (눌림사진 및 스티커, 어플, 측면사진 불가)
3) 규정 미달 사진 제출 시에는 시즌권 제작이 불가합니다.
사. 유효 기간은 2026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7년 폐장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하고 기간 경과 시 만료처리됩니다.

제5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구매자)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당사 시즌권 담당처에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 신고 이전에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말소(폐기) 처리됩니다.

다. 기타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라. 관련법률
1)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와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2) 발급받은 시즌권의 위·변조 행위를 제공하거나, 위·변조된 시즌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민·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시즌권)등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6조 (시즌권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

가. 시즌권 구입자가 제3자에게 당해 시즌권을 약관상 정상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 시
1) 시즌권 폐기
2) 이용자(부정사용자) -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
나. 제3자가 분실, 절취, 횡령, 강취, 사취 등을 통해 습득한 시즌권을 이용한 행위
1) 시즌권 폐기
2) 시즌권 구입자(기명인) - 분실, 도난 신고 후 제3자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신고 전에 제3자가 이용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미신고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시즌권 폐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부정사용자) -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 시즌권 구입자와 합의
다. 시즌권을 재발급 받은 후 기존 시즌권 사용 시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신/구 시즌권 모두 회수, 말소처리됩니다.
라. 시즌권 위・변조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
마. 위 처벌 규정에 대해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

제7조 (시즌권 재발급)

가. 시즌권의 재발급은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분실 시에만 가능하며 재발급 허용은 2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나.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게 유선/현장신고를 하여야하며 시즌권 담당부서에서 서면(소정양식)을 작성 후 재발급 처리되며, 수수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훼손 또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 수수료는 20,000원이고 분실된 시즌권은 사용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의 사용은 불가하며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 단, 분실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분실 신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됩니다. (운영 시간 외 재발급 불가)
라.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시에는 시즌권 담당부서에 반납하여 주시고, 회수된 시즌권은 폐기합니다.

제8조 (시즌권의 양도양수)

가.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며 수수료 납입 및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양도양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도양수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즌권 양도양수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나. 양도양수 수수료는 40,000원이며, 양도양수 기간은 하기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전일권 :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
1) 위 내용과 같이 기본사용기간 이후에는 시즌권 양도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다. 양도양수자의 경우 차기 시즌권 구매 시 연속 구매(년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시즌권 상품 중 경품, 무료 교환권, 판촉 행사용(특가 상품 등)이나 이월된 시즌권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단, 해외 이민, 임신, 유학, 군 입대, 신체장애(3주 이상)등 사유로 인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로 양도양수 가능하며, 시즌권자는 반드시 양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 위(나항) 기간 하기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
마. 시즌권의 분실 시에는 양도 불가합니다. (재발급 후 양도양수 신청 가능)
바. 사업자(지산리조트)를 통해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개인 간 임의로 행해지는 양도양수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시즌권의 환불)

가. 시즌권의 환불은 가능하며 개장전・후의 환불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 시즌권 환불 시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반드시 발급받은 시즌권을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불법 사용 적발 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다.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 전 환불 : 위약금(시즌권 구매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2) 개장 후 환불 : (전일권 : 개장일 ~ 6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금 = 구매가 - 위약금(시즌권 구매 가격의 10%) - 사용금액(시즌 일할 계산액 * 개장 후 영업일수)
※ 일할계산 = (전일권 : 해당종권 정상금액 / 60일)
※ 개장 후 영업일수 = 시즌 개장일 ~ 청구일
3) 개장 후 미수령자 환불 : 위약금(시즌권 구매가격의 10%)공제 후 환불
라. 시즌권 구입 후 수령하지 않은 시즌권 및 연기 신청 시즌권은 다음 해 판매되는 시즌권 판매가와의 차액을 지불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즌권 연장 기간은 다음 해 시즌까지이며 이후 환불, 이월되지 않습니다.
마. 2인 이상의 공동구매 기획 상품의 경우 개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구성원의 차액 지불 시 가능합니다.
※ 환불 입금 기간 : 신청 접수일부터 7~14일 소요 됩니다. ※

제10조 (변경승인)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약관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 게재나 e-mail 발송 등을 통해 적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리프트 고장 및 정전, 정부정책, 전염병, 감염병 등 관련명령, 집합금지, 이용제한, 시설 폐쇄 등)

제12조 (가입 거부)

시즌권 구매 신청 후라도 신청자의 결격사유(과거 시즌권 또는 리프트권 및 회원권의 불법매매, 양도, 대여, 회사의 명예 손상 및 업무방해 등)의 경우 시즌권의 발급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기타)

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 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나.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관할 지역 법원으로 합니다.
다. 본 시즌권 구입 시 당사에 제출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시 홍보자료(e-mail, sms등)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시즌권 구입 시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서(등본, 재직증명서 등) 위조 시 민 ·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약관은 판매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